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303
----------	-------

발의연월일 : 2017. 11. 21.

발의자 : 황주홍 · 이찬열 · 오세정

김철민 · 송기석 · 김관영

김경진 · 윤영일 · 김종회

유성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함) 또는 신고한 자(이하 “신고 사용자”라 함)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그런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및 제119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 사용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의료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19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u> <u>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u> <u>는 신고사용자는 방사선안전관</u> <u>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u> <u>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u> <u>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리령으</u> <u>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u> <u>지정하여 의료관리자의 직무를</u> <u>대행하게 하여야 한다.</u> <u>⑦ (현행 제6항과 같음)</u>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119조(과태료)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u>7. 제5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u> <u>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u> <u>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u>
7. (생 략) ② (생 략)	<u>8. (현행 제7호와 같음)</u> ② (현행과 같음)